

**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  
(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) 시행 공고(재공고)**

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&D 성과 고도화를 위해 2023년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많은 신청 바랍니다.

2023년 7월 14일

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 종 호

부산광역시장 박 형 준

부산산업과학혁신원장 서 용 철

□ 사업목적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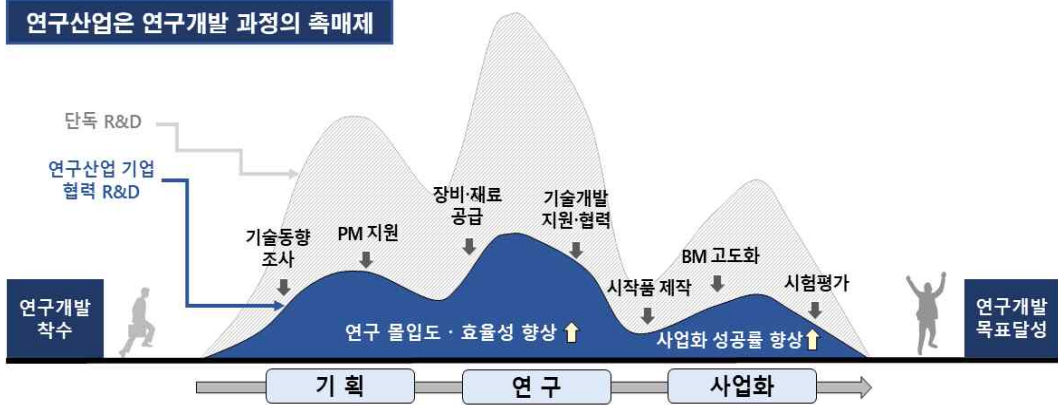
-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의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산업 R&D 성과 고도화
  -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의 혁신역량 강화를 위해 기업성장·기술개발 단계별 맞춤형 육성체계 수립 및 연구개발 지원
  - 대학 연구역량·인프라를 연계하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의 기술애로 발굴 및 전문 교수진 컨설팅 등 협력체계 마련

□ 지원대상 ※ 공모사업별 상이

-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\* 소재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\*\*, 부산·울산·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
  - \*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는 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에 한함
  - \*\* 공고일 기준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에 본사, 공장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기업에 한함
- 스마트팩토리·스마트해양 분야 적합성 검토 및 가점 부여
  - ※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산업 관련 분야도 지원 가능
- 주문연구산업 전문연구사업자 가점 부여
  - ※ 전문연구사업자(주문연구) 신고기업 가점(5점) 부여(제출 마감일 기준,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 참조)

## 연구산업 및 주문연구산업 개념

- (연구산업 개념) 연구개발이 진행되는 전과정에서 R&D 활동을 지원하여 연구·사업화 성과 및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R&D 연동산업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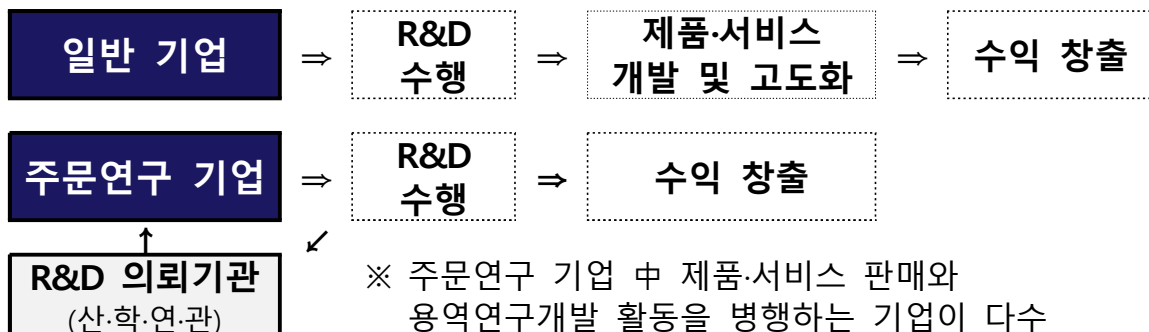
- (연구산업 분야) 연구산업은 연구개발서비스산업(⇒ 주문연구산업 + 연구관리산업)과 연구기반산업(⇒ 연구장비산업 + 연구재료산업)으로 구분

- (주문연구산업) 연구개발을 독립적으로 수행\*하거나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산업 <주문연구사업자>

\* IP 등 연구개발 성과가 양도, 실시권 허락 등의 방식으로 이전되어 매출이 발생

※ 기업의 R&D활동 그 자체가 매출로 이어지는 것이 "주문연구산업"

- 일반 기업은 R&D 활동을 통해 제품·서비스를 개발·고도화하고, 해당 제품·서비스를 판매하여 수익을 창출하나,
- 주문연구 기업은 R&D 활동 그 자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며, "연구개발 전문기업", "연구개발업"으로도 불림



# 1. 세부사업 개요

## □ 사업별 지원규모

### < 2023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 육성사업 지원 규모 >

(단위 : 백만원)

사업명		지원 기간	기업당 지원 금액	지원 건수	지원 대상 (주관기관)	비고
수요형 주문연구	스타트업 육성 (‘22년 기준 업력 7년 이내 + 매출액 10억 미만)	12개월 내외	100	1개 내외	부산 연구산업 진흥단지 내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 <sup>1)</sup>	주문연구 중점 육성분야 (스마트팩토리· 스마트해양) 적합성 평가 및 가점 부여
	스케일업 촉진 (‘22년 기준 매출액 10억 이상 50억 미만)	12개월 내외	200	3개 내외		전문연구사업자 가점 부여 <sup>2)</sup> 부산·울산·경남 소재 공공연구기관 <sup>3)</sup> 및 전문생산기술연구소 <sup>4)</sup> 컨소시엄 가능(공동) (지역조직 포함)
기술애로 컨설팅		4개월 내외	-	7개		부산대학교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전문교수진 컨설팅 지원  공고 기간부터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

※ 지원 금액은 당해연도 과제당 최대 금액이며, 지원 기간은 협약 체결 시점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- 1)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(센텀시티 일반산업단지)에 본사, 공장, 지사,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재한 디지털융합 주문연구사업자
- 2) 「연구산업진흥법」 제6조, 동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(주문연구)
- 3) 「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6호에 해당하는 공공연구기관, 단,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산학협력단을 포함
- 4) 「산업기술촉진법」 제42조에 해당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

사업별 지원내용

사업명	지원내용
수요형 주문연구 (수요의향 기반 연구개발)	· 부산·울산·경남 지역산업(수요처)의 수요의향을 고려한 주문연구기업의 연구개발서비스 개발 및 고도화 지원
기술애로 컨설팅	· 주문연구기업의 효과적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위해 디지털 기술애로 발굴을 통한 전문교수진 컨설팅

※ 세부적인 지원규모 및 지원내용은 첨부1. 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

## 2. 관련법령 및 규정

- 「국가연구개발혁신법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,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105호,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-106호,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」,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」 등

## 3.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

제출기한

사업명	공고기간 및 서류 제출기한
수요형 주문연구	· 공고기간 : 2023년 7월 14일(금)~7월 28일(금) · 제출기한 : 2023년 7월 26일(수)~7월 28일(금) 16:00
기술애로 컨설팅	· 공고기간부터 예산 소진까지 상시 접수

- 제출방법 : 해당사업별 신청안내서 참조하여 제출

사업별 문의처

사업명	문의처
수요형 주문연구	·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사업추진본부 박종현 선임연구원(051-795-5052), 윤금주 연구원(051-795-5054)
기술애로 컨설팅	· 부산대학교 동남권 Grand ICT 연구센터 이해영 산학중점교수

## 4. 사업신청 유의사항

### □ 지원제외 대상

- (중복지원 및 신청) 2023년도 부산 연구산업진흥단지육성사업의 “수요형 주문연구” 및 “산학연 협력연구” 중복신청 불가
  - 2023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산업육성사업 참여기관 중복신청 불가(단, 연구개발서비스 바우처 과제는 중복신청 가능)
- (참여제한)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주관기관, 참여기관 등 공동연구 개발기관을 수행하는 기관 중 기관의 장 또는 연구책임자, 참여 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등
  - \* 참여제한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
- (기타사항) 제출서류가 미비 또는 허위로 작성하거나, 과제 신청 기업(주관기관, 참여기관)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

구분	예외 사항	비고
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	* 단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,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경우, 법원의 개인회생제도에서 변제계획인가를 받거나 파산면책 선고자, 회생인가를 받은 자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	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
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	*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른 성실납부자(체납처분유예신청), 신청·접수 마감일까지 국세, 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,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자 등 정부·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자는 신청(지원) 가능	해당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별도 제출하는 경우 인정

□ 연구개발 과제수 제한

- (적용 기준)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로,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('3책 5공')

- (제외 대상)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 ②항에 근거하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과제

\* 세부사항은 첨부 관련 법령 자료 참조

□ 민간부담금 및 기술료

- 기업 등 영리기관이 과제 참여를 하는 경우 사업비에 따른 기관 부담연구개발비(현금 포함) 및 기술료 부담이 있을 수 있음

\* 세부사항은 사업별 사업신청서 안내 자료 참조

□ 기타사항

- (국가연구자번호 등록)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사이트 이용하여 등록(<https://www.iris.go.kr>)

\* 과제 신청시 주관기관 이외에 모든 참여기관(컨소시엄 기관 포함) 연구책임자 (기업의 경우 대표 포함) 국가연구자번호 등록 필수

- (전문연구사업자 신고) 한국연구산업협회 문의(02-779-9071)

첨부 1. 사업별 신청안내서 각 1부.

2. 관련규정 및 참고자료 각 1부. 끝.